

# 예방접종관리법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01
----------	-------

발의연월일 : 2026. 4. 22.

발 의 자 : 한지아 · 고동진 · 배준영  
박성훈 · 김기현 · 조은희  
이종욱 · 조지연 · 이상휘  
서일준 · 김 건 의원  
(11인)

## 제안이유

예방접종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의 종류,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어린이 중심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거치며 안전한 접종의 실시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체계적인 법률의 필요성은 더

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의 전 과정에 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그 부담을 낮춤으로써 종국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 부담을 낮춤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예방접종 약품을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라.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실시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6조).
- 마.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장은 제조사에 통보 및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신고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관련 절차에 따라 작성·보관·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구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각종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의 구매와 비축을 할 수 있으며,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약품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고, 구매·비축·생산한 예방접종약품의 공급 우선순위와 분배기준을 정할 수 있음(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생산·수입 계획 및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1조).

차.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음(안 제32조).

카. 의료인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을 진단 및 이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피해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  
반을 두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타.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파.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 예방접종관리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 부담을 낮춤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이란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예방접종”이란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접종 대상, 실시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접종받기를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3. “임시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전파 차단 등을 위하여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4. “기타예방접종”이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을 말한다.

5. “예방접종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예방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신예방접종에 사용하는 백신 등을 말한다.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7.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서,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및 임신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 공유, 인력 지원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등의 권리와 의무)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은 국가로부터 예방접종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의료인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예방접종정책 및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예방접종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접종 주간) ①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4월 마지막 주를 예방접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 주간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방접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2장 예방접종 기본계획 등

제8조(예방접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접종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지정,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약품의 지정, 구매, 비축,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예방접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예방접종 관련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예방접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예방접종 실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질병관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예방접종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질병관리청장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예방접종위원회) ①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지정,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3.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이하 “실시기준과 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예방접종약품의 구매, 비축,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예방접종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방접종위원회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예방접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를 둘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12조(예방접종약품의 지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등의 안전성  
및 효과성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예  
방접종약품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 예방접종약품의 지정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  
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

염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14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요청 또는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전파 차단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감염병의 전파 차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할 구역 내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

병의 전파 차단 등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출입이나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①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  
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예방접종 교육)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업무의 수행에 필요  
한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예방접종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거짓 등에 의한 예방접종 금지) 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  
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예방접종 사전 확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려는 자는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  
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제27조에 따  
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예방접종약품 품질 이상 신고 및 통보)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장 및 제15조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조사에 통보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예방접종약품 품질 이상 신고 현황 공개)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 신고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예방접종 관련 기록의 작성 등) 예방접종을 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기록을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예방접종증명서 등)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문서의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절차,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예방접종 완료 확인)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제1항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예방접종 휴가) ① 사업주는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및 비용의 지원 범위, 신청·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예방접종 효과평가) ①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예방접종 실시를 위하여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27조(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 예방접종의 명칭, 일시, 예방접종에 사용된 백신 등에 관한 정보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제15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개설 정보
  - 나. 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보고 내용
  - 다. 제34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 라. 제37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4.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은 예방접종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 창구
  4. 「약사법」 제83조의6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 ④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업무 관련 기관·의료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하거나 검색·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장 예방접종약품

제28조(예방접종약품의 구매 및 비축)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약품의 공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약품을 구매 및 비축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약품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제29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량의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계산하여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이하 “의약품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백신 등을 정하여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생산하게 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예방접종약품의 공급)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구매·비축·생산한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을 위하여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배기준 등을 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예방접종약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 질병이 급속히 확산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치료 병상 현황,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지역

제31조(예방접종약품의 생산 계획의 보고 등) ① 「약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예방접종약품을 생산·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수입 계획(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약품을 공급하는 자는 예방접종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을 공급하는 자에게 예방접종약품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단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백신 등의 구매 특례) ①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예방접종약품으로는 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 등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제33조(의료인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 ① 의료인등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즉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전단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신고 기준·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받거나 예방접종 관련 기록 등으로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의심되어 원인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통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① 의료인등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질병관리청장은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 검사의뢰 방법 및 절차, 검사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①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등을 조사하고, 제42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의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 등

제37조(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진단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제1호에 따른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진료비 및 간병비 중 장애 진단 이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한 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제38조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검사·자문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는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미리 피해보상에 관한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지급기준·절차,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①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이하 “피해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피해보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여부 및 그 보상
2.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및 방법
3.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그 밖에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피해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9조(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의 구성) ① 피해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3. 「의료법」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8조제2항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보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이의신청) ① 제37조에 따른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보상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41조에 따

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로, “보상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통보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3. 「의료법」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한 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7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  
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  
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제37조제1항제  
3호에 따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37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제37조에 따라 보상받  
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제7장 보칙

제4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피해보상 등 예방접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중

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국고지원 등)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관리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제공받는 외국인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협조 요청 등)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인적 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단체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장 별칙

제48조(벌칙) ① 제4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

2. 제23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3. 특별한 이유 없이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명령에 대해 거부, 거짓으로 보고 또는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자
2. 제33조에 따른 의료인등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 따른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 본문을 위반하여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의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청구를 하거나 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청구 또는 결정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청구나 결정의 원인이 되는 예방접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2조제1호로 정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의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그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동일한 청구원인에 대해 2회 이상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국가예방접종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및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6의 제목“(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를“(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치료제 구매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백신이나 의약품으로”를 “의약품으로”로, “백신이나 의약품의”를 “의약품의”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염병 예방에”를 “「예방접종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6호, 제6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 및 제7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3조 중 “제70조 및 제71조”를 “제70조”로 한다.

제76조의4제1항제3호 중 “제28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34조”로 한다.

제81조제7호, 제8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③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관리법」에 따른다.

④ 군보건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제2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예방접종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기록

⑥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 본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⑦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제2항제2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예방접종관리법」”으로,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으로 한다.

⑧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 중 “제18조의4 및 제29조”를 “제18조의4 및 「예방

「예방접종관리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호 및 제40조제3항 중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각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로 한다.

⑨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예방접종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예방접종관리법」”으로 한다.

제11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을 “「예방접종관리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⑪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23조”로,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를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를 “「예방접종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